수 원 지 방 법 원

판 결

사	건	2008가단81639 손해배상(산)
원	고	1. 000 (84 -1)
		수원시
		2. 000 (57 -1)
		수원시
		3. 박○○ (63 -2)
		수원시
		4. 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
		수원시
		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
피	고	김○○ (65 -2)
		안양시
		소송대리인 변호사 000
변론	종 결	2009. 5. 14.
판 결	선 고	2009. 6. 1.

주 문

1.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 A에게 56,976,690원, 원고 B, 원고 C, 원고 D에게 각 2,000,000원과 위각 금액에 대하여 2007. 11. 00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피고는 안양시 □□구 □□동 000-0, 0에서 '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'라는 상호로 소매업에 종사하고 있었고, 원고 A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배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.

나. 원고 A은 2007. 11. 00. 00:00경 배달을 위하여 안양시 □□구 □□동 □□□□□아파트 앞 편도 □차로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피고 소유의 경기 안양 가 0000호오토바이를 운전하여 □□□ 방면에서 □□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위 도로의 2차로를따라 진행 중, 반대 방향에서 유턴을 하는 00루 0000호 차량의 앞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왼쪽 면 부분으로 충격하였고, 이와 같은 충격으로 좌측 경-비골 개방성 골절상 등을 입었다(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).

다. 원고 B은 원고 A은 아버지이고, 원고 C은 어머니이며, 원고 D는 누나이다.

라.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원고는 □□□□□□□□□르루터 휴업급여 4,524,000원, 요양급여 16,931,260원, 장해급여 10,325,260원을 지급받았다.

[증거] 다툼이 없는 사실, 갑 1호증, 갑 2호증, 갑 3호증, 갑 13호증, 을 1호증의 각 기

재, 변론의 전취지.

2. 판 단

가. 당사자들의 주장

(1) 원고들의 주장

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. "① 피고에게는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원고 A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,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신속하게 배달을 할 것을 지시한 과실이 있다. ② 그리고 이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,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 ③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56,976,690원(일실수입 30,469,432원 + 기왕 및 향후치료비 23,707,973원 + 개호비 손해 12,601,075원 - 상계금 14,801,790원 + 위자료 5,000,000원), 원고 B, C, D에게 각 2,000,000원(위자료)과 위 각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"

(2) 피고의 주장

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에게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,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다툰다.

(3) 이 사건의 쟁점

 제1항에 의해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책임이 면제되므로, 재해보상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).

나. 피고의 과실 여부

- (1)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 A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,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신속하게 배달을 할 것을 지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.
- (2) 나아가 피고가 원고 A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, 신속한 배달을 지시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.
- 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A의 신호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에 의해 일어났다. ② 그리고 신호를 준수하여야 함은 특별히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으로서,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신호를 준수하면서 오토바이를 운전할 것을 매일 주지시킬 의무는 없다. ③ 또한 피고가 원고 A에게 신속한 배달을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, 피고가 원고 A에게 신호를 준수하여야 할 의무도 어기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하지 않은이상, 이는 통상적인 업무 지시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.

다. 소결

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상당인과관계 있는 과실이 있다고 할수 없으므로,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과실로 일어났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원고들의 주장은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,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전우진 _____